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 명문장수기업 대상제한 및 업종유지 요건 완화 등 법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규정함(안 제54조의3제1항)
- 나. 주된업종의 변동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라 함은 기존 주된 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을 규정함(안 제54조의3제4항)
- 다. 연구개발비 비중 관련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공동연구개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점기준 및 평가에 따라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규정함(안 제54조의3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1항 중 “법 62조의4”를 “법 제6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하고,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 중분류, 제4호의 경우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업
2. 일반 유흥 주점업
3. 무도 유흥 주점업
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외 기타 여신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의3제2항 “법 제62조의4제1호”를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로, 제2호 “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 “법 제62조의4제1호”를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세분류”를 “대분류”로 수정하며,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의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라 함은 기존 주된 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54조의3제5항 “법 제62조의4제2호”을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로, 제6항 “법 제62조의4제3호”을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로, 제7항 “법 제62조의4제4호”을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로, 같은항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u>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u>	① <u>법 제62조의4제1항</u>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u> ”이란 ----- ----- ----- ----- ----- <u>세세분류</u> <u>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 중분류, 제4호의 경우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u>
1. <u>건설업</u>	1. <u>부동산업</u>
2. <u>부동산업</u>	2. <u>일반 유흥 주점업</u>
3. <u>금융업</u>	3. <u>무도 유흥 주점업</u>
4. <u>보험 및 연금업</u>	4. <u>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u>
5. <u>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u>	5. <u>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소비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생략)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
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생략)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
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
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
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②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

1. (현행과 같음)

2. -----
----- 제7항에 따
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2조의4제1항1제1호에

----- 대분류 -----
----- . 법 제62조의4제1
항제1호의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라 함은 기존 주된
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62조의4제1항2호 ----

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
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
한다.

1. ~ 2. (생 략)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
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
한다.

1. ~ 4. (생 략)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1. ~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 --

1. ~ 4.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

하는 기업”이란 <u>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u>	----- <u>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u> <u>1.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u> <u>2.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4 - 7452